

#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 관리 · 운영 재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2025. 10. 14.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611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0.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 나. 상정의결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14.)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 가. 제안이유

-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를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 관리·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민간위탁의 필요성

-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민간자원 활용 등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센터)
-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 건강생활증진사업
- 개인정보처리
-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
- 준공일: 2009. 9. 26. (최초위탁일:2010. 3. 1.)
- 시설위치: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59 (논현동 125-13)
- 시설규모: 6층 중 4~6층 (연면적: 394.74㎡, 대지면적: 528.5㎡)
-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이용정원(현원): 29명(29명)

- 민간위탁 기간 : 5년 (2026. 3. 1. ~ 2031. 2. 28.)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 출 원 가	① 인 건 비 ~ 노 무 보 험 료	기 본 급	555,319,510	44.8	- 사무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요양보호사 : 최저임금 기준  - 조리원 : 강남구 생활임금 기준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63,000,000		5.1
			야간근로수당	29,851,200		2.4
			휴일근로수당	10,633,810		0.9
			연차수당	9,413,011		0.8
			기타수당(정액급식외)	46,400,000		3.7
		~ 노 무 보 험 료	상여금(연 60 %)	13,761,000		1.1
			퇴직충당금	60,772,010		4.9
			일용잡급	8,136,400		0.7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21,068,875
	국민연금보험료			27,837,874	2.2	
	고용보험료	5,274,545		0.4		
	산재보험료	4,336,848	0.3			
	장기요양보험	2,728,419	0.2			
	소 계		<b>858,533,502</b>	<b>69.2</b>		
	② 운 영 비 ~ 경 비	여비(국내/국외)	340,000	0.03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교육훈련비	10,120,000	0.8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임차료	3,360,000	0.3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우편통신비	2,400,000	0.2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유인물비	0	0.0	-	
소모품비		0	0.0	-		
수선유지비		6,174,320	0.5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공공요금 및 제세		37,659,970	3.0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기타경비		89,563,922	7.2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소 계		<b>149,618,212</b>	<b>12.1</b>			
③ 사업비		<b>232,101,482</b>	<b>18.7</b>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b>지출원가 합계(A=①+②+③)</b>		<b>1,240,253,196</b>	<b>100.0</b>			
수 입 원 가	④ 입장료·이용료	1,079,555,955	87.0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⑤ 사용료	0	0.0	-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사용		
	⑥ 기타수입	160,697,241	13.0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b>수입원가 합계(B=④+⑤+⑥)</b>		<b>1,240,253,196</b>	<b>100.0</b>			
<b>위탁비용(A-B)</b>		<b>0</b>		<b>※ 민간위탁 비용 없음</b>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4.7.12.>
2. 재계약 하는 경우

###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와 시정요구사항,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I.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동의안의 형식 및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됨.

## II. 주요사항의 검토

- 금번 재위탁 대상 시설인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치매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2006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센터), ▶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건강생활증진사업, ▶개인정보처리,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2026.3.1.~2031.2.28.)으로 제출됨.
  -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거에 따라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부분 역시 관계 법령을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논현요양센터에 대해서는 2025. 8. 19. 관련 성과평가가 있었고 평가 결과는 84.7점으로 기준 점수(75점) 이상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참고로,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 결과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에 관한 사

항은 아래와 같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여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p style="text-align: center;">&lt;2024년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회계·지도점검 결과&gt;</p>		
<input type="checkbox"/>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		
지적분야	세부 지적내용	조치사항
회계분야	종사자의 복지 목적으로 진행한 힐링 프로그램과 관련 지출 중 부적절한 지출 발생	권고

(출처: 어르신복지과)

### III. 종합의견

-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요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및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심신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동안 센터 운영이 민간위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의 경우 논현노인종합복지관 내 부속시설로 4층부터 6층까지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이에 평상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끝.